

<p>원수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 ※ 현행 : 위원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안석수)</p> <p>가.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(2000. 10. 1) - 따라 시·도 단위로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「생활보장위원회」의 기능을 「사회복지위원회」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- 당연직 위원에 여성정책관을 추가하며 - 민간인도 행정1부시장과 함께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 - 또한, 여성정책관도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였으며 - 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수 3분의 1 이상 요구로 회의개최 소집요구가 가능도록 변경하려는 것임. <p>나. 검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,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. ○ 이외에 공동위원장제 도입, 위원수 3분의 1 이상 회의개최 소집 요구권의 추가 등은 조례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됨.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	<p>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</p> <p>7. 심사결과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713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</td> </tr> <tr> <td>번호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10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3일 다. 상정일자 :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(2000년 11월 9일 상정·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복지국장 정규태) 가.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(2000. 8. 1)되어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 나. 주요골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제명변경(안 제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조례 →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(2) 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근거 신설(제2조제8호 및 제9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○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(3)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「나병」을 「한센병」으로 함. </p>	의안	713	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	번호		
의안	713	2000년 11월 일 보건사회위원회					
번호							

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안석수)</p> <p>가.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- 개정된 전염병예방법(2000. 8. 1)에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바뀜에 따라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및 병명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- 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근거를 신설(제2조제8호, 제9호)하여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도록 현행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. <p>나. 겸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병명변경 관련조문 정비와 조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 ○ 안 제2조제8호, 제9호 -위탁사업추가 위탁사업에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 참여 유도 및 관리사업은 - 현재 수탁자와의 협약서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,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. ○ 안 제3조제2항 -위탁사업 경비지급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경비를 전액 지급 가능토록 하였음. - 병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수탁단체에 대한 과다지원의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기 위탁사업 경비지원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p>생략</p> <p>5. 토론요지</p> <p>없음</p>	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</p> <p>7. 심사결과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“사회복지시설”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</p> <p>2.“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”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범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설치 등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4조(적용범위)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5조(이용자의 자격)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, 부랑인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으로 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</p>
---	--